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 **경제혁신 3개년 계획**

2014년11월1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월16일(일) 06:00 이후 보도 가능

희망의 새시대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금융위원회

•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
–과 장 성복영(042-481-6840)
–사무관 우창훈(042-481-6846)

•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
–팀 장 하주식(02-2156-9604)
–사무관 전은주(02-2156-9670)

•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
–상무 유윤상(02-3705-5151)
–부장 윤성은(02-3705-5246)

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삭제 본격 시행!

□ 과거 기업의 부도·폐업 등으로 발생한 **부정적 신용정보**로 **금융·신용거래에 제한**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**"부정적 신용정보"가 조기 삭제**된다.

□ 중소기업청(청장 : 한정화)은 금융위원회(위원장 : 신제윤) 및 전국은행연합회(회장 : 박병원)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위해, **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**에 대한 **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'14년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조치는 **지난 3월 「규제개혁장관회의」** 시, 한 재기기업인이 "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"는 건의에 대해서,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.

□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**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**을 받은 후, **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** 및 **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**이다.

○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년(신복위 개인워크아웃)~5년(법원의 개인회생)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금융기관간 공유되었으나,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**부정적 신용정보**(개인회생 등 공공정보에 한정)가 **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**되게 된다.

<주요 변경내용>

대상	개정 前	개정 後
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	공공정보 최장 **2년 등록** 및 금융기관 공유	공공정보 즉시 삭제 및 금융기관 공유 제한
법원 개인회생,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	공공정보 최장 **5년 등록** 및 금융기관 공유	공공정보 즉시 삭제 및 금융기관 공유 제한

□ 재기기업인의 **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**가 있을 수 있지만,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신용카드 발급, 핸드폰 개통 등 **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**해질 전망이다.

□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기업인은 **중소기업진흥공단**(대표번호 055-751-9000) **각 지역본·지부(재창업자금 담당자)로 신청**하면 된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우창훈 사무관(☎042-481-684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